

의안번호	2209530
의 퇴 인	김문수의원
회 답 일	2025.4.17.
추계번호	25D2071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 600만원, 2031년 1억 3,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8억 3,800만원(연평균 1억 6,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안 제15조 등)	15	15	15	15	15	75	15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활용 (안 제35조)	291	118	118	118	118	763	153
합계	306	133	133	133	133	838	168

주: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8조(갈등관리 종합시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제9조(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소관 사무에 대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3	제12조(갈등 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제15조(공론화 대상선정위원회의 설치)	공론화 대상 의제(議題)를 선정하고, 공론화 제도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 선정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5	제17조(선정 위원회의 구성)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1항),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함(제2항)	의무규정
6	제23조(공론화 위원회의 설치)	공론화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공론화 실시 대상으로 의결된 의제별로 선정위원회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	의무규정

7	제25조(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등)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1항),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위원장이 위촉함(제2항)	의무규정
8	제26조(공론화위원회의 운영)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론화위원장이 정하되,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제27조(여론조사)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0	제30조(갈등관리지원센터의 지정)	국무조정실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1	제31조(갈등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활용)	국무조정실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갈등해결 기법·사례 등을 포함한 갈등관리지침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2	제32조(갈등관리 실태의 점검·보고 등)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3	제33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갈등관리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14	제35조(정보화시스템)	국무조정실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 사례 및 갈등관리 절차·기법 등의 정보를 축적한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음	의무규정
15	제36조(재정지원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7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8조(갈등관리 종합시책)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 중
2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 중
3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회의의 구성 및 운영)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 중
4	제15조(공론화대상 선정위원회의 설치)	0	
5	제17조(선정위원회의 구성)	0	
6	제23조(공론화위원회의 설치)	×	공론화 실시 대상 의제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공론화 위원회와 사업의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

7	제25조(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	시점에서 공론화 실시 대상 의제를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8	제26조(공론화위원회 운영)	×	
9	제27조(여론조사)	×	
10	제30조(갈등관리지원센터의 지정)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갈등관리연구기관'과 유사한 기능 수행
11	제31조(갈등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활용)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 중
12	제32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 중
13	제33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 중
14	제35조(정보화시스템)	0	
15	제36조(재정지원 등)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 중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5조 및 제17조)과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 구축·활용(안 제35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
-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함)의 설치·운영 비용은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 그 밖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17조¹⁾는 선정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
 - 선정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고, 회의는 연 4회로 하며,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을 참고하여 25만원으로 가정함

1) 제17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2)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 구축·활용 비용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구축한 ‘청년 인재DB 시스템’ 구축 사례를 참고하여 구축비와 관리용역비로 구분하여 추계함
 -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은 2027년에 구축되는 것으로 가정
 - ‘청년인재DB 시스템’이 민간위탁을 통해 유지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의 관리용역비가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다만, 그 외 재정수반요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안 제23조, 제25 및 제26조), 여론조사(제27조)는 공론화의 실시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공론화 대상 의제의 성격에 따라 소요비용의 격차가 커서 제정안에 따른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표 2] 중앙부처 차원에서 설치·운영된 공론화위원회 현황

구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특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특	경인아라뱃길 공론화특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특
목 적	고준위방사성 폐 기물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공 론화 진행	대입제도 개편 공 론화 진행	아라뱃길 사업의 과거 정책의사결정 과정 분석 및 기능 개선안 마련	제1차 고준위 방 폐물 관리 기본계 획을 공론화 통해 재검토
운영 기간	‘13.10.~’15.6.	‘17.7~’17.10.	‘18.4.~’18.8.	‘18.10. ~’21.2.	‘19.5~’21.2.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위원장 1인 포함 9명	위원장 1인 포함 7명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위원장 1인 포함 15인
활동 결과	2만 7천여명의 의견 바탕 10개 권고사항 도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등 권 고안 도출	대학입시제도 개 편 권고안 도출	주운기능 축소, 문화관광 확대 등 권고사항 도출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8개 정책 권고사항 도출
정 책 반영 여부	제1차 고준위 방 폐물 관리 기본계 획수립(‘16.7월), 고준위방폐물 관 리법 국회 제출 (‘16.11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 (‘17.10월)	권고안 등 반영한 「2022학년도 대 학입학제도 및 고 교교육 혁신방향 」 발표(‘18.8월)	관계기관과 이행 방안 논의	제2차 고준위 방 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21.12월) 고준위 특별법 추진 및 제정(‘25.3월)
예산 집행액	77.5억원	37.3억원	18.3억원	9.2억원	56.6억원

자료: 국무조정실

- 그밖에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시행(제8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제9조), 갈등조정협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지정(제30조), 갈등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활용(제31조), 갈등관리 실태의 점검·보고(제32조),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제33조), 재정지원(제36조)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관련 예산이 국무조정실 소관 공공기관
갈등관리(7032-301) 등에 편성(2025년 기준 350백만원)되어 있음

- 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안 제15조 및 제17조)

- 회의참석수당은 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원에 회의일수와 회의참석수당을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제정안은 선정위원회를 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은 선정위원회 최대인원인 15명으로 가정함
 - 회의참석수당은 1인 1회당 25만원 지급하고, 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추계기간 동안 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3] 선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인원(A, 명)	15	15	15	15	15	—
	지급단가(B, 천원)	250	250	250	250	250	—
	회의일수(C, 일)	4	4	4	4	4	—
	소 계 (D=A×B×C, 백만원)	15	15	15	15	15	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 구축·활용(안 제35조)

-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 구축·활용의 추가재정소요는 국무조정실이 구축·
운영 중인 ‘청년인재DB 시스템’을 참고하여 시스템 구축비와 관리용역

비로 구분하여 추계함

-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의 구축 시 소프트웨어 개발의 복잡도와 난이도는 ‘청년인재 DB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가정함
-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의 관리용역 비용은 ‘청년인재DB 시스템’의 연평균 관리용역 비용(1억 1,800만원)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2022~2025년 ‘청년인재DB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용역 비용: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시스템 구축비	291	-	-	-	291	-
시스템 관리용역비 (위탁운영, 시스템 유지 보수·운영관리 등)	-	31	118	205	354	118

주: 시스템 구축비와 관리용역 비용은 연도별 예산 편성액 기준임

자료: 국무조정실 소관 연도별 확정예산 공통요구자료(Ⅱ-1)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추계기간 동안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 구축·활용의 추가재정 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5]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활용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활용	시스템 구축비(A)	291	-	-	-	-	291
	시스템 관리용역비(B)	-	118	118	118	118	472
	합계(C=A+B)	291	118	118	118	118	7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 600만원, 2031년 1억 3,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8억 3,800만원(연평균 1억 6,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안 제15조 등)	15	15	15	15	15	75	15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활용 (안 제35조)	291	118	118	118	118	763	153
합계	306	133	133	133	133	838	168

주: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활용의 추가재정소요는 국무조정실 소관 유사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재정소요는 추계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